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안 번호	464
----------	-----

제안연월일 : 2022. 3.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창군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주요골자)

- 가. 고시지역 : 평창군 전 도시지역
- 나. 대상면적 : 16,680,775m²
- 다. 읍면동별 적용대상지역

2021.12.31. 기준

읍면동	면적(m ²)	적용대상지역
합계	16,680,775	평창읍·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 대관령면 일부지역
평창읍	3,271,742	하리·천변리·중리·상리·중부리·후평리 일부지역
대화면	3,297,341	대화리 일부지역
봉평면	1,843,825	창동리·평촌리·원길리 일부지역
용평면	196,757	재산리 일부지역
진부면	4,225,466	하진부리·상진부리·송정리 일부지역
대관령면	3,845,644	횡계리·수하리 일부지역

라. 도시지역은 군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음에 따라 「지방세법」 제114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평창군에서 고시된 읍면동별 적용대상지역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2조, 제1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평창군세 조례 제14조

나. 예산조치 : 없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제목개정 2013. 1. 1.]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평창군세 조례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등) 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액을 부과할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해당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군수는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